

건설인 의식개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연회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12개 단체장의 모임인 건설단체장협의회는 지난 11월3일 이동락 회장 및 각 단체 회원사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건설업계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 최근 각 분야에 걸쳐 빈발하는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건설공사에서는 현장관리 철저히 건설재해를 미연방지하여 신뢰받는 건설인의 위상을 확

립코자 「건설인 의식 개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단체장협의회 정주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금년 3월부터 12개 건설단체가 건설단체장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부실시공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주영 회장은 「의식 개혁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일소하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사회 모든 기능이 제자리로 되돌려졌을 때 역할과 기능의 극대화과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건설업계가 이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전 건설부 장관인 박승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기업인의 윤리와 건설인의 의식 개혁」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수준은 선진국을 육박하고 있으나 의식구조는 봉건시대의 시민정신 부재와 가치관의 후진성, 낙후된 생활



박승 중앙대학교 교수

관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식구조 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기업의 목적은 성취감 이므로 사회봉사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정당성을 무시한 채 돈을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기업관을 바꾸어야 하고

둘째, 질서의식이 결여된 폐쇄적인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셋째, 재산증식중심사회인 우리의 후진국 재산관에서 탈피해 선진국의 소득중심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면서 앞으로는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교수의 강연에 이어 수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권오석 회장의 「건설업의 재해극복 전략」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본지에서는 권오석 회장의 강연 내용을 전면 게재하기로 한다.

건설업의 재해극복 전략

(사) 한국 건설 안전기술협회 회장 권오석

1. 건설공사와 안전관리

[1] 서론

안전관리란 주로 근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계통적인 지식체계의 관리를 말한다.

오늘날 공업기술의 진보에 따라 재해는 점차 그 발생기구가 복잡해지므로 방지대책 또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종전의 공학이 순조로운 생산공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안전공학은 생산저해인자 또는 건강저해인자를 배제하여 생산활동을 본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공학의 영역은 전문영역 뿐만 아니고 교육학, 경영학, 물리, 화학, 기계, 전기, 토목, 건축, 교통, 인간공학, 산업공학, 보건위생, 분석공학, 안전심리등이 유기적으로 새로운 종합과학의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이법은 과거의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최저기준의 준수, 확보의 시책에다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책임체제의 확립, 안전보건에 관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의 촉진 및 조치를 강구하는 등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 함으로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종래의 근로기준법 제6장(안전과보건)을 근거로 하면서 국가의 시책이 국민복지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산업재해방지책은 인명존중의 기본적 이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3] 사업주의 의무

ㄱ) 산업 안전보건법 제 5 조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건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따라야 한다.

② 기계, 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 수입하는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원래는 사업주의 근로자의 사이의 사법적 문제로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산업 재해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국가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의 사법적관계에 맡기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ㄴ)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본조는 사업주만 아니라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한 것이다.

[4] 위기로 보는 산업재해 현황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그간 정부의 산재예방 시책에 힘입어 '80년대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나('82 : 3.98% - '91 : 1.62%)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사망등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이켜 보면 '64년 산재보험제도 시행이래 '90년까지 2,567,118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여 이중 사망 31,600명, 신체장해 372,902명, 직업병 28,291명에 이르고 있다.

'91년의 경우만 보면 재해발생자 128,169명으로 1일평균 427명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사망8명, 신체장해 100명으로 나타나 있다.

7)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4,624만일로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326만일의 14배에 달한다.

ㄴ) 경제적손실액 3조5천억원 G.N.P의 1.7%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2천억의 2.8배 재해율은 경쟁국인 동남아 공업국에 비하여 2~4배 높고 강도율은 그 격차로 더욱 크다.

ㄷ) 재해율

한국(91) 1.62%, 일본(89) 0.53%, 싱가포르(89) 0.38%, 대만(89) 0.88%

ㄹ) 강도율

한국(91) 2.34%, 일본(90) 0.18%, 싱가포르(89) 0.42% 대만(88) 0.62%

2. '9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ㄱ) 총괄

구 분	'91	'92	증 감
근로자(명)	7,922,704	7,058,704	△864,000
재해자(명)	128,169	107,435	△20,734
(사망자)	(2,299)	(2,429)	(130)
재해율(%)	1.62	1.52	△6.17
(사망률)	(2.90)	(3.44)	(18.62)

※ '92 목표 재해율 : 1.30(전년대비 19.75% 감소), 사망 재해율 2.42(전년대비 16.2% 감소)

① 83년 이후의 전반적인 감소추세 지속

② 전체 재해수는 전년대비 20,734명이 감소되어 '90년→'91년의 4,724명 감소에 비해 4배 이상의 감소 실적을 나타냄.

③ 근로자수는 건설현장의 1일 평균임금 적용 단가 변경(23,870원→38,228원 60.15% 증가)의 영향으로 864,000명이 감소되어 재해율은 6.17% 감소에 그침

④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30명이 증가

ㄴ) 분기별

		총 계	1/4	2/4	3/4	4/4
재해자	'91	128,169	29,245	33,079	32,678	33,187
	'92	107,435	26,455	29,792	26,778	24,410
사망자	'91	2,299	519	526	554	700
	'92	2,429	534	596	585	714
부 상 직업병	'91	125,870	28,726	32,553	32,124	32,467
	'92	105,006	25,921	29,196	26,193	23,696

전년대비 재해자는 2/4분기까지 월평균 1,069명이 감소하던 것이

① 무재해 운동 등 산재감소 특별 대책이 본격 시행된 3/4분기부터 월평균 3,045명 감소

※ 전년대비 9월 : 3,423명

10월 : 634명

11월 : 4,205명

12월 : 3,918명 감소

② 월평균 사망자도 3/4분기부터 증가추세 둔화

※ 전년대비 분기평균사망자

1/4~2/4 15명 증가

3/4~4/4 8명 증가

③ 연도별 건설재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89	'90	'91	'92
재해자	30,848	37,102	42,302	36,255
사망자	461	673	801	848

전년 동기 비교		
'92.상반기	'93.상반기	증 감
18,649	12,182	-34.7%
373	252	-32.4%

ㄷ) 경제적 총손실 추정액

① 경제적 총손실액은 '91년도에 비해 3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90→'91년도의 증가율 30.07%에 비해 2.72%p 증가

② 재해자 1인당 평균 산재보상금 지급액은 '91년도의 5,473천원에서 '92년도에는 8,671천원으로 58.43% 증가되었음.

③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전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92년도 재해자 36,255명의 경제적 손실액은 1조8천5백14억원(산재보험지급액 : 3,703억원)으로 1인당 평균 5,106만원(산재보험금 1,021만원)이었다.

'92년도, '93상반기 경제적 손실액

() 비율

	재해자	사망자	경제적손실	재해자	사망자	경제적손실
전산업 재해 (건설업제외)	71,180 (66.3%)	1,581 (65.1%)	28,065억원 (60.3%)	31,249 (72.0%)	754 (75.0%)	12,620억원 (61.3%)
건설업 재해	36,255 (33.7%)	848 (34.9%)	18,514억원 (39.7%)	12,182 (28.0%)	252 (25.0%)	7,982억원 (38.7%)

리) 업종별

(단위 : 명)

업종별	'91년도			'92년도			증감(%)
	근로자수	재해자수(사망)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사망)	재해율	
전업종	7,922,704	128,169(2,299)	1.62	7,058,704	107,435(2,429)	1.52	△6.17
광업	57,053	6,457(359)	11.32	54,556	4,905(364)	8.99	△20.58
제조업	3,573,471	60,243(614)	1.69	3,225,717	47,624(606)	1.48	△12.4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3,176	173(9)	0.40	43,255	166(8)	0.38	△5.00
건설업	2,627,010	42,302(801)	1.61	1,911,378	36,255(848)	1.90	△18.01
운수·창고 및 통신업	602,749	11,295(320)	1.87	579,983	9,900(329)	1.71	△8.56
임업	2,781	25	0.90	3,931	44(2)	1.12	24.44
어업	1,892	22(3)	1.16	2,804	64(9)	2.28	96.55
농업	8,651	65	0.75	12,060	111(7)	0.92	22.67
기타 산업	1,005,921	7,587(193)	0.75	1,225,020	8,366(256)	0.68	△9.33

* 임업, 어업, 농업은 '91. 7. 1 적용

①재해자는 기타 산업을 제외한 전산업이 감소-특히 증가 추세에 있던 건설업분야 재해자가 감소 추세로 반전

②사망자는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업을 제외한 전산업이 증가-광업(증 5명), 건설업(증 47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증 9명), 기타 산업(증 78명)

비) 세부내용별

①규모별 :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8.35% (73,425명)를 차지함('91년도의 68.33%보다 0.02%p 증가로 발생빈도가 거의 유사)

규모별	재해자(명)	구성비(%)
총계	107,435	100.00
10인 미만	11,460	10.67
10-15	8,889	8.27
16-29	11,815	11.00
30-49	9,963	9.27
50-99	12,464	11.60
100-199	12,435	11.58
200-299	6,399	5.96
300-499	6,621	6.16
500-999	8,395	7.81
1000인 이상	18,994	17.68

②성별 : 남자가 전체 재해의 89.74% (96,409명) 차지하였으며, 여자는 10.26% (11,026명)로 나타남('91년도에 비해 여자가 0.14%p 증가)

성별	재해자(명)	구성비(%)
총계	107,435	100.00
남	96,409	89.74
여	11,026	10.26

③입사근속 기간별 : 2년 미만이 전체 재해의 75.96% (81,607)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0-6개월 미만이 전체 재해의 55.70% (59,844명)로 나타남. (0-6개월 미만의 경우 '91년도 56.87%에 비하여 1.17%p 감소하였으며 2년 미만의 경우도 0.42%p 감소)

입사근속기간	재해자(명)	구성비(%)
총계	107,435	100.00
0-6개월	59,844	55.70
6개월-1년	11,062	10.30
1년-2년	10,701	9.96
2년-3년	5,642	5.25
3년-4년	3,778	3.52
4년-5년	3,146	2.93
5년-10년	8,212	7.64
10년 이상	5,050	4.70

④시간별 : 8-10시가 20.39% (21,906명)로 나타났고, 14-16시가 17.94% (19,272명), 10-12시가 17.92% (19,256명)로 나타남 ('91년도에 비해 12-14시가 1.48%p 증가한데 반하여 14-16시는 1.82%p 감소되었으며 타시간대는 거의 유사)

시 간 별	재해자 (명)	구성비 (%)
총 계	107,435	100.00
0-2	2,383	2.22
2-4	1,669	1.56
4-6	1,966	1.83
6-8	6,561	6.11
8-10	21,906	20.39
10-12	19,256	17.92
12-14	17,319	16.12
14-16	19,272	17.94
16-18	10,164	9.46
18-20	3,527	3.28
20-22	2,281	2.12
22-24	1,131	1.05

⑤요일별 : 월요일이 16.46% (17,681명), 수요일이 15.74% (16,905명), 화요일과 목요일이 각각 15.72% (16,891명, 16,886명)로 나타남 ('91년도와 비교하여 구성비가 거의 유사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의 재해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요 일 별	재해자 (명)	구성비 (%)
총 계	107,435	100.00
월	17,681	16.46
화	16,891	15.72
수	16,905	15.74
목	16,886	15.72
금	16,732	15.57
토	14,775	13.75
일	7,565	7.04

⑥월별 : 6월이 9.90% (10,632명)로 나타났고, 4월이 9.21% (9,890명), 7월이 9.16% (9,879명)로 나타남 ('91년도의 재해발생 빈도순인 12월, 9월, 5월과는 상이함)

월 별	재해자 (명)	구성비 (%)
총 계	107,435	100.00
1 월	8,973	8.35
2 월	7,999	7.44
3 월	9,483	8.83
4 월	9,890	9.21
5 월	9,270	8.63

6 월	10,632	9.90
7 월	9,879	9.19
8 월	9,091	8.46
9 월	7,808	7.27
10 월	8,252	7.63
11 월	8,258	7.69
12 월	7,900	7.35

⑦재해정도별(요양기간) : 20-90일이 37.97% (40,788명), 6개월 이상이 36.07% (38,751명), 15-28일이 13.81% (14,836명)로 나타남 ('91년도에 비하여 사망을 포함한 6개월 이상 재해는 3.01%p 증가)

재 해 정 도 별	재해자 (명)	구성비 (%)
총 계	107,435	100.00
사 망	1,885	1.75
6개월 이상	38,751	36.07
91일-180일	7,921	7.37
29일-90일	40,788	37.97
15일-28일	14,836	13.81
8일-14일	1,033	0.96
4일- 7일	2,221	2.07

⑧재해구분별 : 작업장내 사고가 62.41% (67,054명), 건설현장사고가 28.54% (30,658명), 뇌졸중 등 기타 질병이 4.09% (4,392명), 교통사고가 3.72% (4,002명)로 나타남 ('91년도에 비하여 작업장내 사고는 2.11%p 감소, 건설현장사고는 2.4%p 증가, 교통사고는 0.55%p 증가)

재 해 정 도 별	재해자 (명)	구성비 (%)
총 계	107,435	100.00
작업장내사고	67,054	62.41
건설현장사고	30,658	28.54
교 통 사 고	4,002	3.72
금속,중금속, 난청,유기용제등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451	0.42
진 폐 증	877	0.82
기 타	4,393	4.09

⑨기인물별 : 동력기계에 의한 재해가 22.62% (24,303), 가설건축구조물이 13.84% (14,976명), 재료가 12.64% (13,580), 운반 차량이 7.73% (8,306명), 건설기계가 7.16% (7,697명), 적재물이 3.59% (3,854명), 기타가 17.55% (18,860명)로 나타남 ('91년도에 비해 구성비가 거의 유사)

기 인 물 별	재해자 (명)	구성비 (%)
총 계	107,435	100.00
동력기계	24,303	22.62
건설기계	7,697	7.16
목재가공기계	1,706	1.59
동력크레인	1,533	1.43
동력운반기	1,204	1.12
운반차량	8,306	7.73
압력용기	412	0.36
용접장치	473	0.44
화학설비	81	0.08
건조설비	371	0.34
로·요동	8	0.01
전기설비	901	0.84
인력기계용구	2,845	2.35
가설건축구조물	14,976	13.84
유해·위험물	1,260	1.17
재 료	13,580	12.64
적 재 물	3,854	3.59
산업용로봇	13	0.01
환 경	2,047	1.91
기 타	18,860	17.55
기인물 없음	3,005	2.80

⑩관리적 원인별 : 기술적 원인이 26.25% (28,197명), 교육적 원인이 59.33% (63,744명), 작업 관리상 원인이 14.42% (15,494명)로 나타남('91년도에 비해 기술적 원인은 5.37%p 증가한 반면

관 리 적 원 인	재해자 (명)	구성비 (%)
총 계	107,435	100.00
1. 기술적 원인	28,197	26.25
㉠구조물장치 설비불량		
㉡구조재료의 부적합		
㉢생산방법의 부적당		
㉣점검·정보보존불량		
㉤기 타		
2. 교육적 원인	63,744	59.33
㉠안전지식의 불충분		
㉡안전수칙의 오해		
㉢경험훈련의 미숙		
㉣작업방법의 교육불충분		
㉤유해작업 교육불충분		
㉥기 타		
3. 작업관리상원인	15,494	14.42
㉠안전관리 조직결합		
㉡작업수칙 미제정		
㉢작업준비 불충분		
㉣인원배치 부적당		
㉤작업지시 부적당		
기 타		

교육적 원인과 작업관리상 원인은 각각 2.71%p, 2.66%p 감소)

㉠ 지방노동관서별 감소 실적

①재해자 감소 관서 : 서울 서부 등 40개 관서 (재해자 증가 관서 : 영주 등 4개 관서)

②사망자 감소 관서 : 춘천 등 19개 관서(사망자 증가 관서 : 부산청 등 24개 관서)

[2] 건설 현장의 문제점

㉠ 건설업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하여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① 우선 작업자체가 위험성이 많고

②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작업의 내용 및 상황이 계속 변경될 뿐만 아니라

③ 일기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④ 수개 공중이 일시에 한 장소에 투입됨으로서 원, 하청간의 원활한 안전관리 수행이 어렵고

⑤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으로 노무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

㉡ 위와 같은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전체재해중 아직도 건설재해의 비중이 높고 특히 추락, 낙하에 의한 재해강도가 커서 경제적 손실도 건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중 재해율이 높고, 사망자 발생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보면 대부분

①건설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겼다는지

②안전관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지

③부적절한 공법의 변경과 특히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업장임을 볼 수 있음.

㉣ 아직도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인명은 경시한채 최대한의 공기단축과 경비절감에 따른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여

①적당히 산재처리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②소속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담당자 이외에는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건설현장은 공중에 따라 수시로 근로자

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관리적, 교육적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함

① 실제로 건설재해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교육적 원인이 59.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현장에서 작업하다 온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없이 곧바로 투입함으로써 불안정한 행동 유발의 원인이 되게 함.

② 또한 내일 모래면 간다는 생각으로 개인보호구(특히 안전모)도 규격에 맞지 않는것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잘 착용치 않고 있음(물론 보호구가 작업에 지장을 줌으로써 착용을 기피하는 근로자도 있음)

ㄴ) 안전관리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① 그저 상부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집합교육이나

② 공사현장내 스피커를 통하여 녹음기를 크게 틀고하는 식의 지극히 형식적인 안전관리 사례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③ 근원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완전한 시설을 일일이 체크, 시설투자를 늘려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3] 건설재해예방 정책방향

ㄱ) 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은 대부분 사법처리 하였고 각종 지도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사용중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92년부터는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사업장 다수를 사법처리('92년도 105개소, 93상반기중 29개소)하였으며, 압찰제한등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바,

ㄴ)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TV신문등 매스컴에 홍보하여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는 지도감독면제, 관계자 포상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ㄷ) 작년의 30대업체 재해율 조사에 이어 금년 4월에는 50대 업체를 조사 발표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재 도급순위 51위 부터 100위까지의 재해율을 조사하고 있음.

ㄹ) 조사가 완료되는 10월경 부터는 건설업 평균 재해율(1.90)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PQ심사시 감점(-3점)을 주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감점을 주는 반면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중에 있음.

ㅁ)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① 12개월 이하의 입찰참가 제한이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하도록 하되 앞에서 언급한 업체별 재해율을 토대로

② 평소에 안전관리를 잘하여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제한 기간의 1/2을 감소시켜 주고

③ 평소에 안전관리를 게을리하여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기준제한 기간의 1/2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므로써 같은 사고라 할지라도 업체별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증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음.

④ 이 제도는 금년 11월-12월경 관계법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임.

대형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

사망자수	기준제한기간	재해율에 따른 제한기간
3~5명	4개월	2~ 6개월
6~9명	6개월	3~ 9개월
10명 이상	12개월	6~12개월

* 영업정지 기간은 입찰제한 기간의 1/2정도를 고려하고 있음.

ㄴ) 100대 건설업체 소속 작업반장 13,919명에 대한 직종별 안전교육을 10월부터 실시하여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교육이수카드」를 배부하고

ㄷ)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는 심사와 확인검사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금년 7. 1부터 아파트는 안전공단 관할지도원에서 심사토록 하였고 점차로 전분야에 대해 기술지원에서 심사토록 할 예정이며,

○)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등 사고위험 시기별 집중점검과 감독권별 책임전담제 실시, 신도시, 지하철 현장 관리등은 앞으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음.

ㄱ) 건설업에 대한 산재보험의 개별실적 효율제 도입문제도

①현재 건설업에 있어서는 재해발생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반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고 재해가 적게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ㄷ) 우리부 노동보험국에서 현재 법개정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7월1일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임.

ㄴ)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①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유자격자 부족현상을 해소해 주기 위해 양성교육 기간을 '95년말까지 연장하였으며,

②안전보건에 대한 발주자의 의무조항도 대폭 강화하여 공사기간의 임의단축금지,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부적절한 공법변경 금지와 원·하도급업체간 안전보건상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 토사붕괴 장소, 기계 전도위험 장소 등에서 원도급자 안전조치 의무를 법제화 하였음.

[4] 근원적 안전성 확보

ㄱ) 건설재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담 부서로 본부에 건설부로 안전과 시설.

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로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크레인, 리프트 등에 대하여 설계, 완성 또는 정기검사를 엄정히 실시한다.

ㄷ)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여 착공케하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철저실시 대상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①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

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②최대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③터널건설등의 동사

④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

⑤게이지 압력이 1.3kg/cm² 이상인 잠함공사

⑥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⑦기타 건설설비, 크레인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작업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5] 재해방지를 위한 책임 소재

재해의 발생과 책임면으로 고찰하여 보면 국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에 의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함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법으로 작업장과 기계, 기구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재해로 인한 부상의경우 보상에 의해 의무화 되고 있으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도의적 책임을 자각하는데 주된 신뢰를 요하고 있다.

경영자는 어떠한 장치, 장비, 기계 자재등을 선정 구입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이고 취급, 조작, 보수, 설치등에 대해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이 바로 그 이유라 하겠으며 감독자의 입장은 경영자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음에 경영자의 다름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책임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며 자기의 부양가족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자기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재해방지가 손실방지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안전관리는 기업경영 유지와 이윤 추구에 적극적인 위치에 서야 할 때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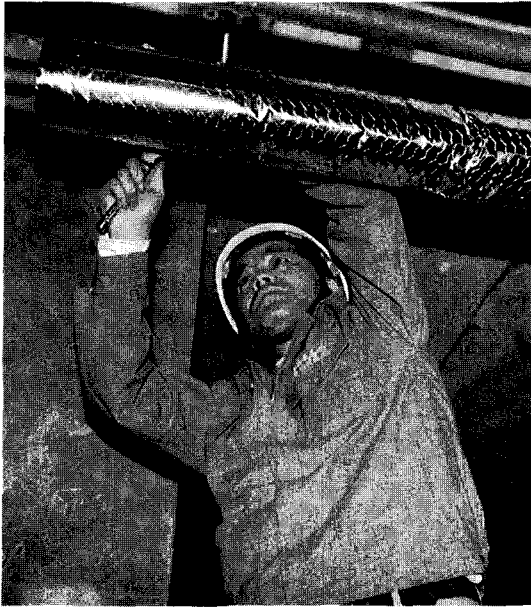
[6]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안전관리 지침과 이해

우리들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등 각종 시방서와 관련법규의 준수사항이 있다.

안전관리 문제도 예외일 수 없이 산업안전보건법등 재해방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제목에 불과하여 타분야의 시방서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건설심의 대상공사는 공사규모로나



설계회사의 기술수준이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거울이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심의 대상공사의 대부분이 특별 시방서등 안전분야의 내용은 매우 미흡하여 공사감독관의 안전분야 감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2%에 달하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주고 있는바 엄정한 사용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부에서 1991. 7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서 작성요령 지침을 설계용역 업체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설계회사들이 시공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싶다.

실질적으로 용역회사보다 시공회사들은 해외 공사과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으며 또한 충실하게 지키며 공사수행을 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내의 접목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 되어있다.

[7]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대책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

ㄱ) 각 현장과 유기적인 체계유지(산재외적

기술지원 포함)

ㄴ) 재해의 손실을 명확히 조사하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파악할 것(보상, 파손, 대기, 재시공등) * 1:4는 미국

ㄷ) 전사원 안전관리 요원화 추진 (양성기관 활용)

ㄹ) 전사원 안전부서 근무 의무화

[8] 공사현장

ㄱ) 안전관리조직 활성화(책임과 의무 부여)

ㄴ) 전현장 직원 안전관리 요원화(양성과정 활용) (전문강사 양성)

ㄷ) 전근로자 교육 (신규채용, 공중변경시, T.

B.M 등)

①취업증지급

②제안제도

③공중별 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

ㄴ) 안전시설 확보 및 관리

ㄷ) 보호구 사용과 관리교육

ㄹ) 전문기관 활용(안전진단, 교육등)

* 진단내용을 철저히 활용

ㄱ) 특별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해당공사의 사전안전성 심사를 득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할것을 의무화 할 것.

3. 맺는말

우리들은 지금 문민정치를 기대하며 마음이 들떠 있다. 인간은 노동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더불어 살아간다.

이제 지나온 30여년은 근세한국의 산업혁명기라고 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3D의 대표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

현재 범 국민적으로 추진되는 무재해 일터만들기 운동에 동참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주역답게 건설분야의 기술인들은 다함께 개혁의식을 갖어야 하겠다.